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산업단지계획 변경
-유 보 지 개 발 사 업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2021. 12

우정엠테크밸리 주식회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1.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유보지 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
- 면 적 : 447,466㎡(기정 290,442㎡, 증 157,024㎡)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 사 업 비 : 1,461억원
- 개발사업시행자 : 우정엠테크밸리 주식회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그림 1.1-1) 사업지구 위치도

- 그간의 여건변화로 인한 우정국가산업단지의 불합리한 구역경계를 조정
- 도시계획도로, 지적선 등 명확한 경계설정을 통해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계를 설정

아산만

우정지구
기아자동차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추가 편입부지①(86,206㎡)
이화석전로 경계 잔여지 포함
*생산관리지역

중로9-11호선
이화석전로

미지정지역

우정지구
유보지(290,442㎡)

이화교차로

남양면로
중로2-5호선

추가 편입부지②(70,818㎡)
생산관리 지역 포함

생산관리지역

기아자동차사거리

농림지역

기아자동차

법례
- - - 우정지구경계
- - - 본사업 경계

- 2 -

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면적 447,466㎡)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표 1.1-1〉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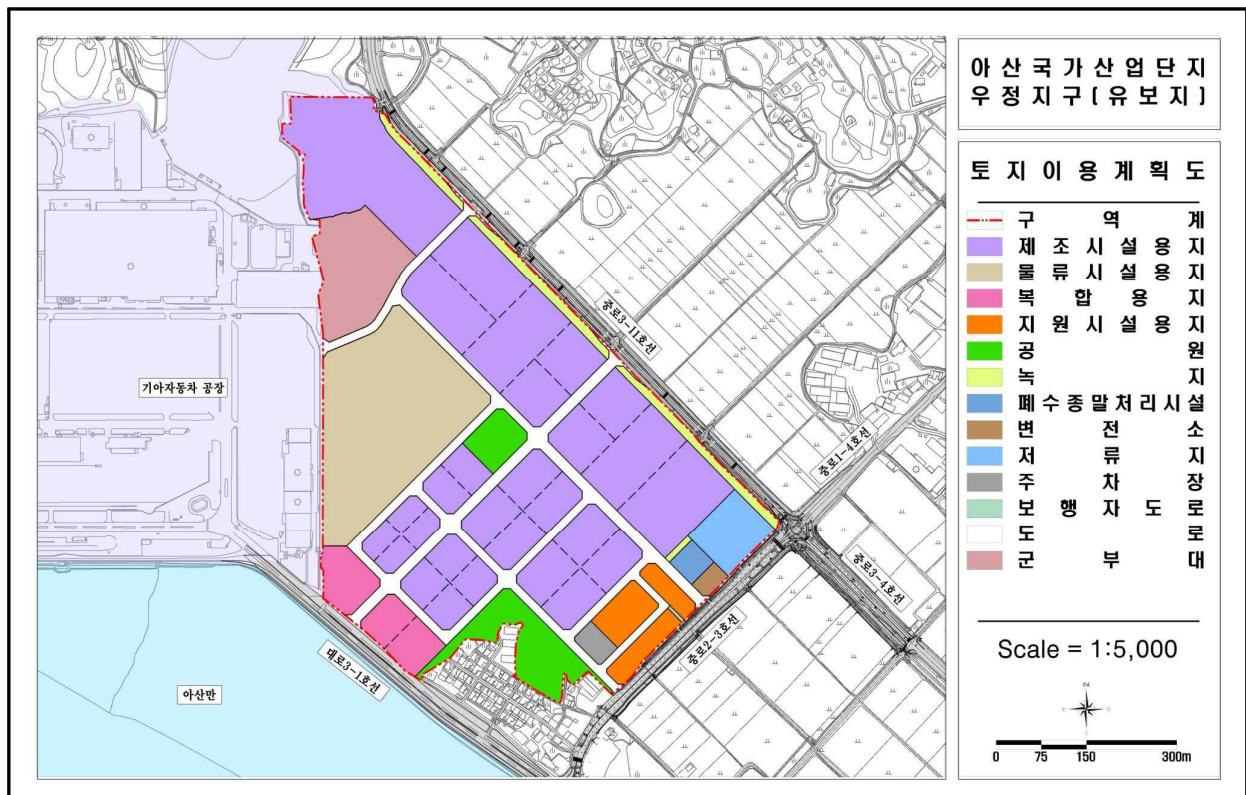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사업면적 : 447,466㎡		

〈표 1.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라.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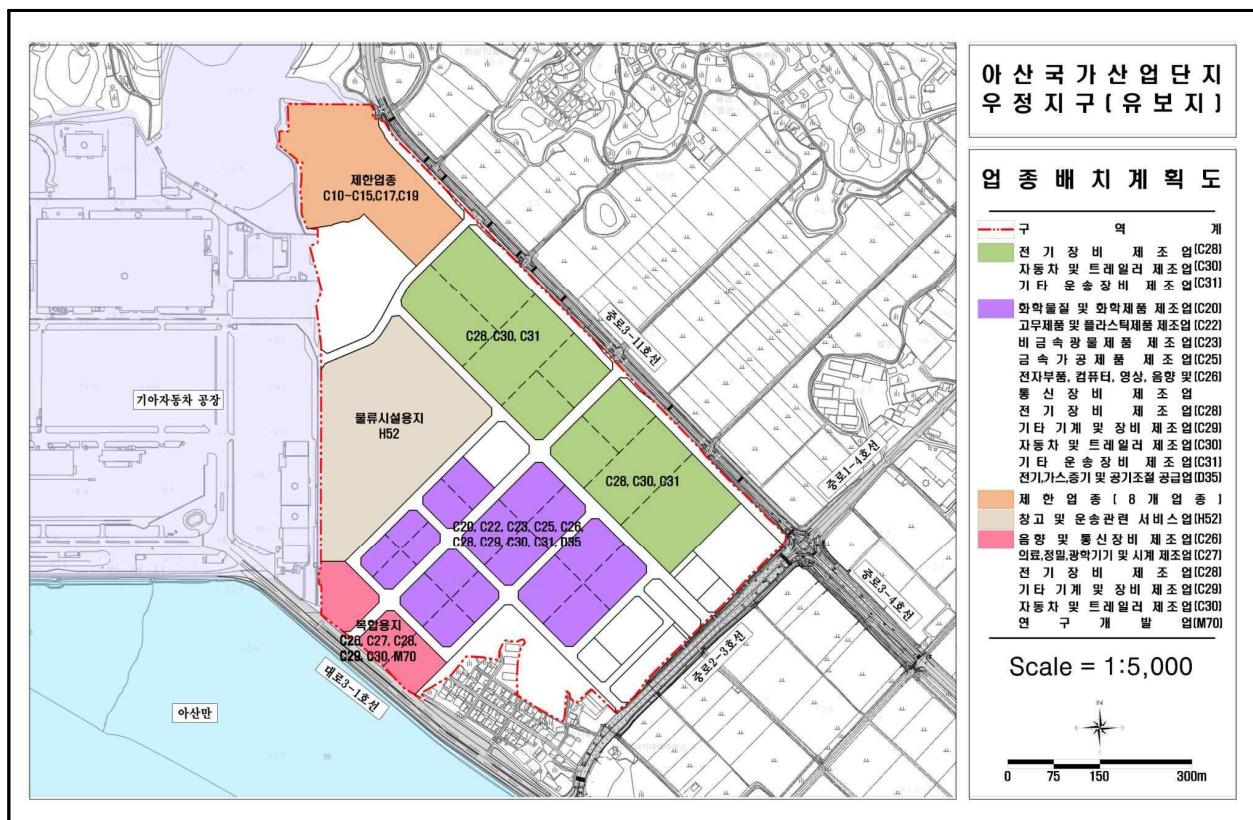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447,466	100.0	
산업시설용지	285,772	63.9	
제조시설용지	220,172	49.2	
물류시설용지	65,600	14.7	
복합용지	17,748	4.0	
지원시설용지	14,927	3.3	
공공시설용지	104,835	23.4	
공 원	24,116	5.4	
녹 지	12,636	2.8	수로포함
폐수종말처리장	2,773	0.6	
변전소	1,796	0.4	
저류지	10,625	2.4	
주차장	2,692	0.6	
도로	50,197	11.2	
군부대	24,184	5.4	존치



(그림 1.1-3) 토지이용계획도

마. 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96,421	100.0	—
제조시설용지	소계	220,172	74.3	—
	C28,C30,C31	102,348	34.6	—
	C20,C22,C23,C25,C26,C28,C29,C30,C31,D35	75,907	25.6	—
	제한업종(C10~C15,C17,C19)	41,917	14.1	—
물류시설용지	H52	65,600	22.1	—
복합용지	C26,C27,C28,C29,C30,M70	10,649	3.6	60%적용



(그림 1.1-4) 업종배치도

1.2 환경영향평가평가 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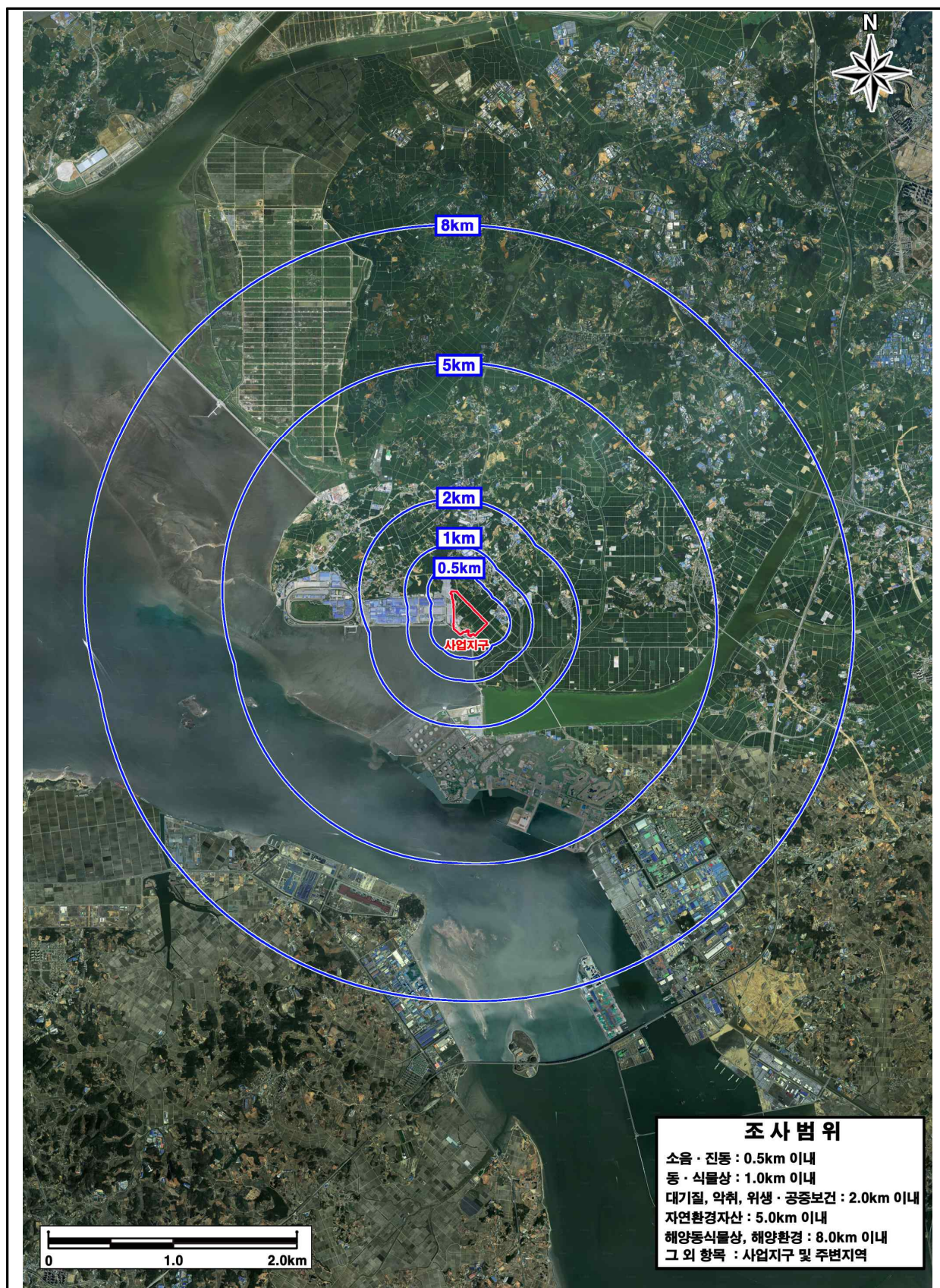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사업특성의 파악 및 지역상황 등의 환경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육상 식생 및 동물서식지 영향 예상지역	○ 사업지구 경계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해양동·식물상	○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	○ 사업지구 경계 8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 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 이용	○ 사업지구 인근 기상관측소	○ 공사시 ○ 운영시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 이동·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사업지구 내 유치업종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지구 인근에 미치는 영향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에 따른 영향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표 1.2-1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수 환 경	수 질 (수리·수문)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사업시행에 따른 홍수유출량 변화 예상지역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운영시 수자원이용에 따른 수역의 이용상황 변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해양환경	- 해양 수·저질 및 연속조류 등 조사 - 공사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 운영시 오·폐수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8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토지 환 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토 양	사업지구내 산업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지형·지질	공사중 지형 및 지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구내 공장 등 지장물 철거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 예상지역 - 사업지구내 공장소음에 의한 주변지역의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생 활 환 경	위락·경관	산업시설의 입지로 경관의 변화 및 Sky Line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위생·공중보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	운영시
	전파장애	변전소 등으로 인해 전파장애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 회 · 경 제 환 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 및 주거의 변화, 민감계층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산 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시설 배치로 인해 산업환경 변화가 예측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그림 1.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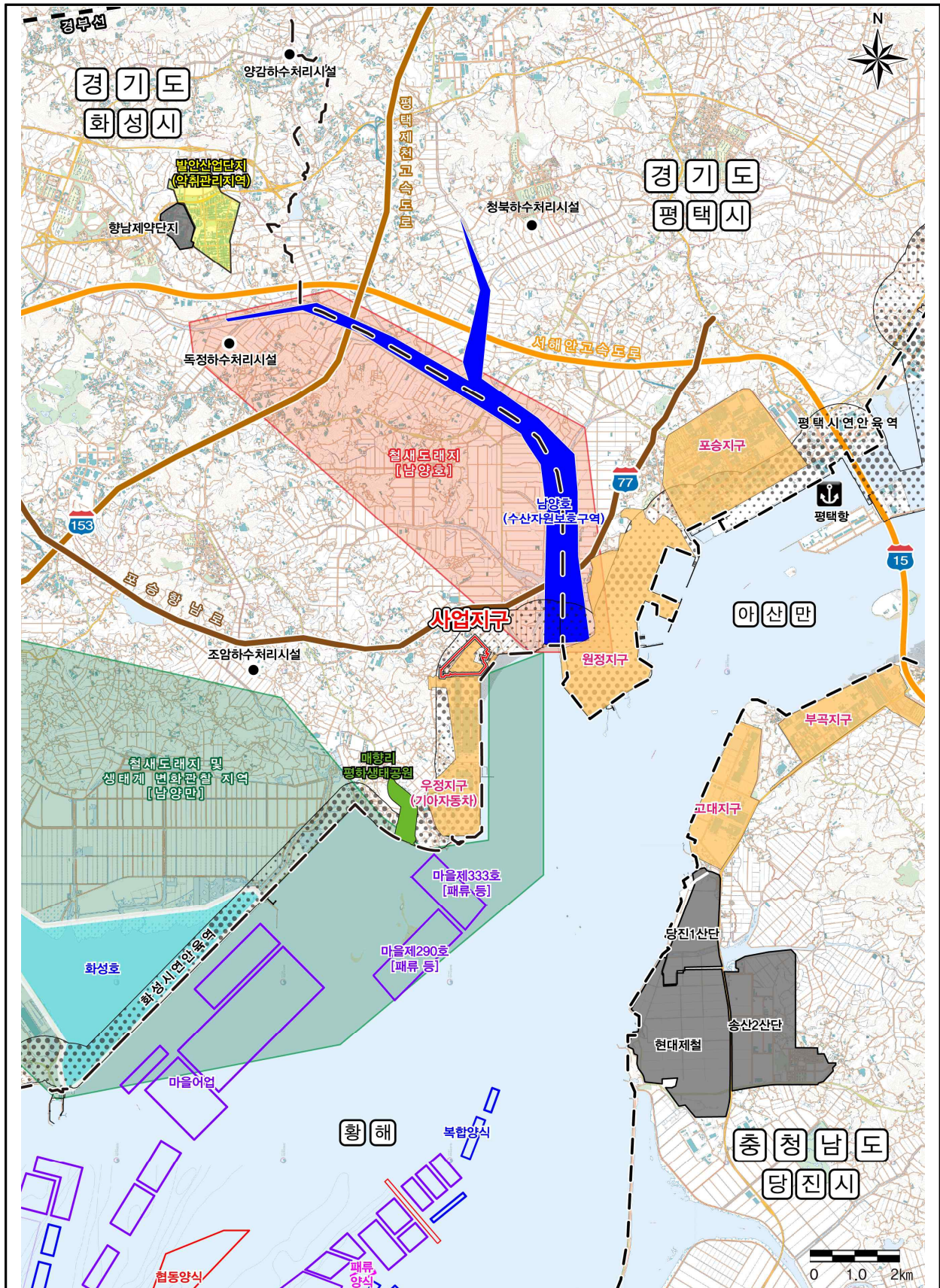
1.3 지역개황

〈표 1.3-1〉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정현황

구 분		근거법령		화성시	사업지구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정책기본법		○	○	○ 대부분 3등급
	생태·자연도			○	○	○ 대부분 3등급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 12조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제 31조	○	×	○ 3개소 (칠보산, 시화호, 남양만)
	생태관광지역		제 41조	×	×	○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제 8조	×	×	○ 해당사항 없음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 4조		×	×	○ 해당사항 없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 7조		×	×	○ 해당사항 없음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	×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	×	○ 해당사항 없음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	×	○ 1개소(매박섬) - 약 21.3km 이격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제 2조		○	○	○ 연안육역 관리지역 포함
	겨울철새도래지	-		○	×	○ 사업지구 인근 - 남양호 : 약 0.6km 이격 - 남양만 : 약 0.03km 이격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		○	×	○ 화성시 3개소 위치 - 약 19.4km 이격
대기 환경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		×	×	○ 해당사항 없음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	○	○ 화성시(전체)
	오존 경보제 실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 7조	○	○	○ 화성시(전체)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제 8조	○	○	○ 경기도 남부권
	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		제 41조	○	○	○ 경유 0.1%이하 ○ 중유 0.3%이하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		제 42조	×	×	○ 해당사항 없음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제 43조	×	×	○ 해당사항 없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시행령 제 12조	-	×	○ 반경 1km 상주인구 - 2만명 이하
	악취 관리지역	악취방지법 제 6조		○	×	○ 1개소(발안산업단지) - 약 10.2km 이격

〈표 1.3-1 계속〉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정현황

구 분		근거법령		화성시	사업지구	비 고
수 환 경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	○ 해당사항 없음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구역		제8조	○	×	○ 화성시 일부 : “진위A” - 사업지구 해당사항 없음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15조의 4	×	×	○ 해당사항 없음
	상수원 호소	물환경보전법	제2조	×	×	○ 해당사항 없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		제32조	○	○	○ “나” 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제33조	×	×	○ 해당사항 없음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		×	×	○ 해당사항 없음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수법 제12조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해당사항 없음
	연안오염 총량관리구역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	○ 해당사항 없음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유하거리(남양호) - 약 2.5km
기 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현황	석면안전관리법		×	×	○ 해당사항 없음



(그림 1.3-1) 지역개황도

1.4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1.4.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1) 육상식물상

-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 유형 및 법정보호종
- 생태계교란 생물 일부 유입 및 정착 가능성 있음
- 훼손수목 발생 : 밤나무 418주, 아까시나무 412주, 상수리나무 279주, 갈참나무 264주, 소나무 259주로 총 1,632주

2)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사업시행 시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영향을 피해 주변지역으로 이동 및 서식
- 조류 : 이동성이 양호한 조류의 특성상 주변 안정된 지역으로 회피할 것
- 양서파충류 : 금개구리 등 농경지 훼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 예상
- 육상곤충류 : 사업지구 내 서식지 감소로 주변지역으로 회피 예상

3) 육수동물상

- 환경에 별도 악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나. 해양동·식물상

1) 식물플랑크톤

-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2) 동물플랑크톤

-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3) 저서동물(조간대 및 조하대)

-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4) 어류(어란 및 자치어)

-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1.4.2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1) 공사시

- PM-10, PM-2.5 경기도 조례기준 초과
 - PM-10 : 24시간평균 56.36~121.05 $\mu\text{g}/\text{m}^3$, 연평균 32.08~48.62 $\mu\text{g}/\text{m}^3$
 - PM-2.5 : 24시간평균 31.12~46.77 $\mu\text{g}/\text{m}^3$, 연평균 18.01~23.02 $\mu\text{g}/\text{m}^3$
 - NO₂ : 1시간평균 30.73~80.77ppb, 24시간평균 14.09~20.48ppb, 연간 12.01~15.22ppb

2) 운영시

- PM-2.5, NO₂ 경기도 조례기준 초과
 - PM-10 : 24시간평균 54.05~67.23 $\mu\text{g}/\text{m}^3$, 연평균 32.01~38.03 $\mu\text{g}/\text{m}^3$
 - PM-2.5 : 24시간평균 31.13~43.62 $\mu\text{g}/\text{m}^3$, 연평균 18.01~23.02 $\mu\text{g}/\text{m}^3$
 - NO₂ : 1시간평균 58.93 ~ 166.06ppb, 24시간평균 16.29 ~ 41.74ppb, 연간 12.37 ~ 20.47ppb

나. 온실가스

1) 공사시

- 투입장비의 연료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발생 예상
- 공사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 1,722.37tCO₂-eq/년
 - CO₂ : 3.6139tCO₂-eq/일, CH₄ : 0.0031tCO₂-eq/일, N₂O : 0.0091tCO₂-eq/일

2) 운영시

- 운영시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31,969.88tCO₂-eq/년
 - 산업시설 : CO₂ : 30,294.55tCO₂-eq/년, CH₄ : 11.374tCO₂-eq/년, N₂O : 16.74tCO₂-eq/년
 - 기타시설 : CO₂ : 1,643.26tCO₂-eq/년, CH₄ : 3.08tCO₂-eq/년, N₂O : 0.91tCO₂-eq/년
-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48,366.61tCO₂-eq/년
- 차량통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1,178.65tCO₂-eq/년
 - CO₂ : 1,142.25tCO₂-eq/년, CH₄ : 2.24tCO₂-eq/년, N₂O : 34.16tCO₂-eq/년
- 수도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127.302tCO₂-eq/년

다. 악취

1) 공사시

-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악취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운영시

-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및 오·폐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영향이 예상됨
 - － 1시간평균 21.5~63.0OU, 24시간평균 4.2~16.2OU

1.4.3 수환경분야

가. 수질(수리·수문)

1) 공사시

- 홍수유출량 : 개발전 49,491m³, 개발후 55,605m³
- 토사유출량 : 개발전 108m³/storm, 개발중 1,999m³/storm
- 투입인원에 따른 오수발생량 : 14.220m³/일
- 투입인원에 따른 BOD부하량은 2.0054kg/일

2) 운영시

- 계획급수량 : 전체 1,329m³/일(생활용수 357m³/일, 공업용수 972m³/일)
- 계획오수량 : 전체 1,118m³/일(산업시설 990m³/일, 지원시설 27m³/일 복합시설 101m³/일)

나. 해양환경

- 부유사 확산 수치모형실험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본안시 모델링 예정

1.4.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구역계 설정 : 447,466m²
 - － 지정구역 : 290,442m²
 - － 추가편입부지 : 157,024m²

1.4.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공사시

- 투입 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28.4kg/일) 및 분뇨(8.7L/일) 발생
- 지장물 철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 : 주거용 4,591.7ton, 비주거용 3,242.2ton
- 폐석면 발생 : 10.4ton
- 임목폐기물 발생 : 589.2ton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35.2L/일

2) 운영시

- 계획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1.35ton/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 176.50ton/일
- 지정폐기물 발생량 : 4.57ton/일

나. 소음·진동

1) 공사시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 － 소음 예측결과, 50.9~75.3dB(A)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 초과
 - － 진동 예측결과, 25.4~52.6dB(V)로 전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 만족

2) 운영시

- 공장가동시 소음도 발생
 - － 건물 밖에서의 소음도가 49.8dB(A)로 예측되어,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공장 소음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장가동시 저주파 소음 발생
 - － 저주파 소음 영향예측결과, 20.3~48.3dB로 각 주파수별 목표기준 만족
 - －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은 건물 차폐 등에 의한 감쇠효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치는 소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위락·경관

1) 공사시

- 토공사에 따른 지형변화 경관영향이 예상됨

2) 운영시

- 조망점 선정 : 사업지구 주변 예비조망점 14개, 최종조망점 8개 지점 선정 및 경관변화 검토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입지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라. 위생·공중보건

- 비발암성물질 위해도평가 결과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가 평가기준(1) 초과
- 발암성물질 위해도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평가 기준($1.00E-06$)초과

마. 전파장해

- 송전선로에 의한 영향
 - 사업지구 내 세부 송전계획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중으로 협의 완료 후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음
- 변전소 설치에 의한 영향
 - 전국 변전소 자계장 측정치는 평균 $0.084\mu T$, 최대 $13.16\mu T$ 로 국내 전기설비기준($83.3\mu T$) 이하로 조사된바, 사업지구 내 변전소는 주거지로부터 남측 약 230m, 북측 약 290m 이격되어 있어, 변전소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변전소 설치에 따른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1.4.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주거

- 공사시 공사인부 투입으로 일시적 유동인구 증가, 편입주택 내 거주민의 이주에 따른 국소적인 영향
- 사업지구 내 종사자수 3,713인, 이용인구 1,724인으로 산정됨

나. 산업

- 본 사업시행시 화성시 및 주변지역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1.5 환경영향 저감방안

1.5.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1) 육상식물상

- 세륵·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을 통한 유입 및 제거활동
- 이식수목 : 갈참나무 26주, 소나무 31주, 상수리나무 37주 총 94주 이식

2) 육상동물상

- 공사시기 조절을 통한 영향 최소화
- 세륵시설, 살수차 등 운영
- 저소음·저진동 공법 및 공사관리자 현장교육 등 실시

3) 육수생물상

- 가배수로, 침사지 등 하천생태계 영향 최소화

나. 해양동·식물상

- 부유물질 저감대책
-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설치
- 부유물질 모니터링 및 공정관리

1.5.2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1)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세륵세차 설치·운영
- 공사용 차량규제,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 비포장도로에서의 차량운행속도를 저속으로 제한

2) 운영시

- 입주업체 최적방지시설 설치
-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나. 온실가스

1) 공사시

- 공사장비 공회전 최소화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고효율 건설장비 사용

2) 운영시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및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 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 수립

다. 악취

- 입주업체별로 적절한 탈취시설을 설치·운영
- 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 수립

1.5.3 수환경분야

가. 수질 및 수리수문

1)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배수구역별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현장사무소 가설시 발생오수 위탁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2) 운영시

- 영구저류지 1개소 설치
- 수지정수장에서 화성2관로를 통하여 공급
- 오폐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처리
-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 설치

나. 해양환경

1)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설치

2) 운영시

- 오폐수처리시설 설치하여 처리

1.5.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적법절차에 의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대지안의 조경,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통해 목표생태면적을 달성

나. 토양

1) 공사시

- 폐유저장시설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발생한 분뇨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타 토양오염 발견시 토양오염조사 실시

2) 운영시

- 공장운영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계획
- 유류 등의 누출로 토양오염 확인시 오염토양 복원계획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시 처리대책

다. 지형·지질

- 비탈면 경사기준을 적용하여 비탈면의 유실 및 붕괴를 방지
- 외부반출·입 최소화 하는 토양유용계획 수립, 표토(비옥토) 재활용 계획 수립

1.5.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공사시

-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 설치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성상별 처리,위탁처리, 순환골재 재활용 등)
- 폐유보관시설 설치, 지정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신고 및 적정 처리

2) 운영시

- 분리수거함 설치
-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법 처리

나. 소음·진동

1) 공사시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를 준수
- 작업은 가능한 주간에 실시, 공사차량 주행속도 20km/hr로 제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H = 4.0m$, $L = 395.0m$ 설치 후 목표기준 만족

2) 운영시

- 공장 가동 소음 저감대책 수립
 -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만족을 위한 소음 방지시설 설치
 - 공장 내부 방음 효과가 있는 건축재·방음창 등 사용하여 시공
 - 작업동 또는 기계실은 부지 중앙에 집약, 창고 및 사무동은 부지 외곽에 배치
 - 가능한 저속 회전기기의 선정 및 소음이 심한 기기실의 경우 방음 및 흡음재 시공
- 저주파 소음 저감대책 수립
 - 소음기 부착 및 정류 장치 설치
 - 운영시간 조정

다. 위락·경관

- 건축물 내·외부 환경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 및 색채계획 수립
-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공원 및 녹지 계획 수립
- 화성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야간경관계획 수립
- 사업지구 북측 배후에 위치한 구릉지 및 동남측 농경지와 조화로운 도시 스카이라인 계획수립

라. 위생·공중보건

- 업종별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입주업체 제한
- 공원·녹지계획 수립

1.5.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주거

- 편입토지, 지장물, 주택 등에 대하여 공사 시행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감정 및 개별보상 실시

나. 산업

-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주변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저감방안 미수립

1.6 대안

- 본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유보지 조성사업」은 과거 1979년 12월 14일 아산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 기아자동차 제조공장이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산업단지내에 40여년간 남아있는 장기 미개발토지로 금회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검토함

1.7 결론

- 본 사업은 1979년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미개발된 국가산업단지(유보지)를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화성시 서남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하고,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등을 설정하고, 자연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상의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도출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음
-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 저감대책을 이행함으로써 본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본 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할 계획임